

고용기준법상의 여러분의 권리:

임시 원조 기관의 촉탁직원

안내문

임시 원조 기관의 촉탁직원

임시 원조 기관이 여러분에게 동 기관의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임시 촉탁직을 맡기기로 했거나 맡기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촉탁직원입니다. 현재 맡은 촉탁직이 없고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 기관과 고용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촉탁직을 맡은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고용주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해당 기관입니다.

촉탁직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시점은 여러분이 해당 기관을 그만두거나 해당 기관이 여러분의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할 때입니다.

이 안내문은 고용기준법 2000(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 ESA)에 의거하여 2009 년에 입법화된 여러분의 새로운 권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ESA 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근무시간 제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각종 무급휴가 등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 특정 제외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 및 공휴일 급여에 대한 권리

온타리오 주는 공휴일이 8 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촉탁직을 맡은 상태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근무하지 않고 공휴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휴일 급여액을 계산해보려면 다음 웹사이트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http://www.labour.gov.on.ca/english/es/tools/php_calc.php.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공휴일 급여 + 할증 급여(정규 급여액의 1.5 배 이상), 또는
- 정규 급여 + 공휴일 대체 휴가(공휴일 급여 지급)

촉탁직을 맡고 있지만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또는 휴가 중인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 급여를 받고 대체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공휴일 급여만 받기로 합의(서면)할 수도 있습니다. 촉탁직을 맡고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도 공휴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시 원조 기관에서 이른바 '선택 근무(elect-to-work)' 고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공휴일에 관하여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통지 및 해직수당에 대한 권리

임시 원조 기관에서 3 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할 때 일반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해고 통지를 받거나, 해고 통지 대신에 해직수당을 받거나,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기간은 최소 1 주(고용기간이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일 경우)에서 8 주(고용기간이 8 년 이상일 경우) 사이입니다. 사전통지 기간은 해당 기관의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촉탁직의 수행 기간이 아닌, 해당 기관에 고용된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일괄 해고 통지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괄 해고 통지에 대한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labour.gov.on.ca/english/es/pubs/guide/tempagencies.php>.

해당 기관에 5년 이상 고용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할 때 해직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원조 기관에서 이른바 '선택 근무' 고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원조 기관이 여러분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돕는 대가로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력서 작성이나 취업면접 준비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 또는 조언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기관에서 일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에게 취업 알선을 해주하고자 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에게 취업 알선을 해주지 못하도록 임시 원조 기관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직접 고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특정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촉탁직을 맡길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해당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고용인으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은 여러분에게 그 고용 제의를 수락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고용인으로 고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받아야 할 정보

여러분이 임시 원조 기관의 촉탁직원이 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 안내문을 비롯하여 기관의 법적 명칭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여러분이 촉탁직원이 된 후 되도록 속히 서면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특정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직무를 위임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법적 명칭 및 연락처, 임금률 및 각종 급여(해당될 경우), 근무시간, 직무의 개요, 예상 직무 수행 기간(명시되어 있을 경우), 급여주기 및 급여일 등의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직무를 위임할 시점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었으나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되도록 속히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ESA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유로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용기준법상의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질문하거나 권리를 요구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에게 맡긴 직무를 취소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ESA 권리에 대해 질문하거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문이 있거나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이 안내문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기준정보센터(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에 문의하십시오: (416) 326-7160 (무료전화 1-800-531-5551), 청각장애이용 무료전화 TTY 1-866-567-8893.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 를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노동부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ServiceOntario Centre)에서도 고용기준 클레임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를 알아보려면 1-800-267-8097 로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는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정확한 최신 정보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되도록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